


본인은 옥승리주 개인이다 옥승리주와 옥승리주 개인은 옥승리주 개인이다 옥승리주 개인이다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개발 30415- ⁶¹⁰¹	(전화: 694-7133)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	
수신처 보존기간				
시행일자				
보조 기관	소장 전 결	협조 기관	법무담당관 사필 사무계장 경리계장	
	관리과장			
	분양계장			
기안책임자	문준호			
경유 수신 함조	제1안 내부결재	발 산 의		
제 목	목동 4차 아파트 분양공고			
1. 개발 30415- 6101 (87. 9. 17.) 호와 관련입니다.				
2. 목동 4차 아파트 분양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.				
가. 공고내용 : 별 첨				
나. 공고일시 : 87. 9. 19. - 9. 21				
다. 거제신문 : 6 격일간지				
라. 규 격 : 5단 x 37Cm				
마. 소요예산 : 24,591 천원				
바. 예산과목 : 목신정개발비, 사무비, 사무관리, 수용비 및 수수료				
사. 공고료 지급방법 : 청구에 의하여 온라인 계좌 입금			46	

제 2 안

수 신 : 공보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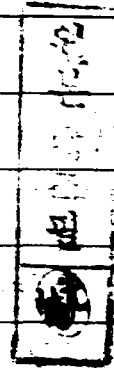
발 신 : 소 장

제 목 : 공고의뢰

1. 목동 4차 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 합니다.

" 제1안 제2항 가 - 라항 이기시행 "

첨부 : 공고안 부. 끝.



47

2910-278

서울특별시증고자 호

목동신시가지아파트분양공고

- 위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 개발사업지구
- 규모: 15층 7동 630세대

1. 분양대상 및 금액

금액 단위: 원

구분	전 층 수	전 면적 (㎡)	전 세대 수	분양가 (㎡당)	분양금				
					1차	2차	3차	4차	5차
1순위	15	113,211.25	630	49,000	57,123,000	10,000,000	11,000,000	1,000,000	1,987,760
2순위	15	113,211.25	630	49,000	57,123,000	10,000,000	11,000,000	1,000,000	1,987,760

2. 신청자격

-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된 신시가지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입주자
-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의2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자
-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의2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자
-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의2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자

순위	대상
1순위	○ 청약예금(예금) 가입 분으로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분
2순위	○ 청약예금(예금) 가입 분으로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분
3순위	○ 제1순위 및 제2순위 이외의 분으로서 해당주택 분양금의 50% 상당 청약금을 신청일 현재 예치하신 분

3. 접수방법

- 청약예금 금액에 구분하여 접수하되 신청일 당일 세 차례 접수
- 근무시간 1층: 1, 2, 3, 13, 14, 15층 2층: 4~12층

* 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아파트로서 실제로 입주 하실분을 위하여 건물은 짓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연금 신청을 어지급할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

4. 입주자 선정방법

- 청약예금(예금) 가입 분으로서 최저 청약금과 동등한 금액을 예치하신 분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무한위로 무조건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.
- 청약예금(예금) 가입 분으로서 청약금과 동등한 금액을 예치하신 분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등한 금액을 예치하신 분은 무첨의 추첨방법에 의한
- 분양주택 세대수의 1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다주택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계약
- 예비입주자에 대해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 보하고 입주자선정은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함

5. 분양일정 및 장소

순위	신청일	장소
1순위	87. 9. 23	구분청약예금 을 가입한 주택은행 본·지점
2순위	87. 9. 24	모텔하우스 주점 주점 주점
3순위	87. 9. 25	모텔하우스

6. 구비서류 및 지침물

○ 신청서

구분	비	비	비
1순위	○ 주택분양신청서 1통 신청금액에 비례	○ 주택청약예금 증명서	○ 청약예금의 구비서류 등본 1통 모집공고일 3개월내 발행분
2순위	○ 청약예금 증명서 등본 1통	○ 청약예금 증명서 등본 1통	○ 청약예금 증명서 등본 1통
3순위	○ 청약예금 증명서 등본 1통	○ 청약예금 증명서 등본 1통	○ 청약예금 증명서 등본 1통

○ 계약서

- 계약서 2통(주택 계약서 1통, 청약예금 1통)
- 주택분양신청서 1통
- 청약예금 증명서 등본 1통
- 청약예금 증명서 등본 1통
- 청약예금 증명서 등본 1통

7. 유의사항

-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약정금액의 미납을 예방하고 계약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5년간 청약 자격이 상실됩니다.
- 제1차 청약금의 최저단위는 일반민간이며 일반민간 미만으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분양신청 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제1차 청약금의 미납미만의 금액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민원미만의 금액은 민원 단위로 접수합니다.
- 제1차 청약금의 한달 또는 한자금액과 이리미와 숫자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달 또는 한자의 금액이 유효합니다.
- 청약서의 약정인원에 남았을 인원은 민간명세서의 민간도장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재 4명(인간남인 포함) 불비시는 분양신청을 무효로 합니다.
- 계약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당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배양조치 합니다.
- 2건 이상의 신청시, 2순위 및 3순위 또한 이 발견될 경우 신청전체를 무효로 합니다.

8. 기 타

- 분양권 및 청약예금의 반환금의 분담금 편입을 약자의 동의에 있을 수 있다
- 분양권 및 청약예금의 반환금의 분담금 편입을 약자의 동의에 있을 수 있다
- 분양권 및 청약예금의 반환금의 분담금 편입을 약자의 동의에 있을 수 있다
- 분양권 및 청약예금의 반환금의 분담금 편입을 약자의 동의에 있을 수 있다

1987. 9. 19.

서울특별시



- 문의처: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694-7133, 697-9924, 699-4811~2
- 교통편: 광화문 시청앞 55.61.603, 좌석버스 영등포 시청앞 111.122.212.31.102 입석버스